

() [] 현역병입영 [] 현역선발 통지서

입영대상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병적지	
입영일시 및 부대 등	입영일시	입영부대 <small>입영부대 가는 길</small>
	모이는 장소	군사특기(계열, 직종)

「병역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,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역(병)으로 선발되어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()참모총장 (직인생략)

유의사항
1.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「병역법」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
2. 입영여비(원)는 입영 후 귀하의 금융계좌[병무청장이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되는 신용카드(나라사랑카드)를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]로 지급되며,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여비를 다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3. 입영 전 지나친 음주와 기름진 음식섭취로 혈압과 지방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귀가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, 입영 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